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7

# 수 원 고 등 법 원

## 제 3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23누1456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○○○○○○공사 |
| |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|
| | 담당변호사 김○○ |
| 피고, 피항소인 | ○○시장 |
| |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 |
| | 담당변호사 정○○ |
| 제 1 심 판 결 | 수원지방법원 2023. 8. 10. 선고 2019구합64359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24. 2. 28. |
| 판 결 선 고 | 2024. 3. 27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7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가 2019. 1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88,992,05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합계 8,358,28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, 피고가 2019. 1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706,831,59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합계 41,774,87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는 390,663,2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, 농어촌특별세는 38,696,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"추정되는 점"과 "등에 비추어 보면"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
, ⑤ 관련 사건(서울고등법원 2020누35860호)에서 이 사건 사업 중 1단계 사업지구 준공일인 2017. 12. 31.자 기준으로, 위 1단계 사업지구의 1㎡당 택지조성원가를 감정한 결과, 피고가 산정한 1㎡당 205,396원보다 많은 1㎡당 220,935원(원가충당부채 제외 시)이었던 점(을 제5호증)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7

## 3. 추가 판단

가. 주장

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판단

1)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.

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,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,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).

2)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[1]로 기업회계기준상 비용 계정이 아닌 자산 계정에 계상(計上)되는 점, ② 원고 스스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개별 토지별로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, 이후 전체 비용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인 택지조성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, 임의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승낙일까지 소요된 이 사건 사

1)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한 가용연수(可用年數)를 증가시키는 지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7

업부지 전체의 1㎡당 택지조성원가에 이 사건 토지들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위 토지들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한 점[이 사건 사업 중 1단계 사업지구(이 사건 토지들 포함)에 대하여 먼저 택지조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,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경우, 1단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], ③ 당시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들의 1㎡당 택지조성원가는 평균 약 98,386원으로(원고의 소장 및 피고의 2019. 8. 26.자 준비서면 참조),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인 이 사건 사업 1단계 사업지구의 1㎡당 택지조성원가인 220,935원(원가충당부채 제외 시)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점, ④ 원고는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 등에게 문의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**4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○○

판사 박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27

판사 송○○